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(원병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65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25일
발 의 자 : 원병일, 이영환, 이정애
박은경, 최성임, 박성찬
김영실, 김진희, 이도재

1. 제정 이유

○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～제4조)

나.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다.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가. 「지방재정법」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남양주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,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남양주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개사항)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1항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
2.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·감사 요구와 조치 결과
3.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
4.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공개시기 및 방법)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세입·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등에 관하여 시민이 신고 또는 제안하는 사항(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)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해 남양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안한 사람(이하 “제안자”라 한다)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(예산낭비 등의 심사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안 사항이 접수되면 그 타당성, 합리성, 실효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)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, 기관, 개인 등에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「남양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 임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(원병일 의원 대표발의)에 따른 제7조(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)에 필요한 성과금 지급 근거 기준 마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평균 1억원 미만

-「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으로 운영되는 예산성과금 포상금 예산액은 2021년 현재 50,000천원임

○ 소요예산 : 50,000천원

4. 작성자

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강 호 진

붙 임 **관계법령 발췌서**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48조(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,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